

국제 산업보건 동향

미국 OSHA, 시멘트 사용중 발생하는 피부질환 예방 안내서 발표

〈2008년 2월 21일자 미국 OSHA 보도자료〉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시멘트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피부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서를 발표하고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질환 위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멘트 (Portland cement)와 관련한 관련 정보를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시멘트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며,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찰과상 등을 입힐 우려가 있으며, 시멘트 중 일부에는 6가 크롬이 함유된 경우도 있다.

- OSHA에서 제공하는 안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시멘트에 노출되는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OSHA의 시멘트 관련 규정을 사업장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멘트와 관련한 피부질환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멘트의 흡입 및 안구접촉 등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시멘트(Portland cement) 작업과 관련한 OSHA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용 보호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항상 신뢰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 근로자가 상해 혹은 장애를 입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시멘트 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

화, 장갑 및 보호장비가 사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항상 사용가능한 장비로 무상교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멘트관련 작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사업주는 세척설비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 시멘트관련 작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6가 크롬 함유 시멘트 노출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정보를 교환(HazCom)하고, 적절한 위생대책의 중요성 및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예방대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생설비, 개인용보호구 및 정보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기타 제공내용으로는 작업용 보호장갑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에 대한 안내, 안전한 보호장갑 탈착 방법 및 절차 소개, 안전화 및 기타 개인용 보호구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및 피부질환 예방을 위한 피부관리 방법 소개 등을 제공하고 있다.

※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출처〉 <http://www.osha.gov/dsg/guidance/cement-guidance.html>

〈2008년 1월 23일자 중재방 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노동안전위생법 제66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작업관련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강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진단 항목 개정사항을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개정내용 골자

건강진단의 종류	대상 근로자	실시 시기
채용시 건강진단	상시 근로자	근로자 채용시
정기 건강진단	상시근로자	1년 이내마다 1회
특정업무 종사자(특수) 건강진단	노동 안전 위생 규칙 제 13조 제 1항 제 2호에서 명시한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근로자	작업배치 전환시 및 6개월 이내마다 1회
해외 파견 근로자 건강진단	해외에 6개월 이상 파견하는 근로자	해외에 파견시 및 귀국후 국내의 업무에 복귀시

◎ 본 건강진단 항목의 개정 배경은 정기 건강진단 결과 고지혈증,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업무에 의해서 생긴(작업관련성)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산업재해 인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년의 남성을 중심으로 비만자의 비율이 증가경향에 있지만, 비만자의 대부분이 가지는 당뇨병,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작업관련성 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데 따라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작업관련성 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건강진단 항목을 부분 제·개정하게 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건강진단 항목의 추가·변경(노동 안전 위생 규칙 제 43조, 제44조)
- 채용시의 건강진단, 정기 건강진단, 특정업무 종사자의(특수) 건강진단 및 해외 파견 노동자의 건강진단의 항목 추가·변경
 - ① 복부둘레(내장지방)검사 추가
 - 지금까지 비만의 지표로서 주로 이용되어 온 BMI(※)에 비해, 복부둘레의 내장지방이 뇌·심장 질환의 발병과 관계된다는 많은 보고가 있어 비만의 위험지표로서 우수한 것부터 추가
 - ※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 체중(kg) / 신장·신장 (m²)
 - ② 혈중 지방 검사 중, 혈중 총콜레스테롤을 저밀도 지방단백질(LDL-콜레스테롤)로 변경
 - LDL-콜레스테롤은,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며 단독으로 뇌·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주요

위험요인임

- 건강진단 항목의 생략기준 수립 및 변경
(노동안전위생규칙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기준)

- 정기 건강진단 및 특정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의 생략기준 제정 및 변경

① 복부둘레(내장지방) 검사 생략기준 제정

→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 생략 가능 범위 제정

- 40세 미만(35세는 제외)의 근로자
- 임신중의 여성 등으로 복부둘레에 내장지방의 축적 여부 측정이 불가능한 근로자
- BMI가 20 미만인 근로자
- BMI가 22 미만이며, 복부둘레 측정결과를 자진신고한 근로자

② 당뇨검사의 생략기준 삭제 및 필수검사로 지정

- 당뇨검사를 통해 혈당검사만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당뇨병 질환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짐

- 기타사항

① 복부둘레의 간단하고 쉬운 측정방법 규정

- 옷을 입은 채로 측정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실측치로부터 1.5cm 공제한 값을 기재)
- 검진장소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함

② 흡연력 및 의약품 복용이력 파악 철저

- 문진(환자의 과거병력 및 업무경력의 조사)시에 흡연력, 의약품 복용이력의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함 🍷

◎ 건강진단 항목개정 관련 신규대조표

구분		[구]	[신]
진찰 등	문진(기왕력 및 업무력의 조사)	○	○
	흡연력 및 의약품 복용이력		※1
	신체계측(신장)	●1	●1
	(체중)	○	○
	(복위)		●2 ※2
	시력	○	○
	청력	○	○
	지각증상 및 타각증상의 유무의 검사	○	○
	혈압	○	○
흉부엑스선 검사		○	○
객담검사		□1	□1
빈혈 검사	혈색소량	●2	●2
	적혈구수	●2	●2
간기능 검사	GOT	●2	●2
	GPT	●2	●2
	γ-GTP	●2	●2
혈중지질검사	혈청총콜레스테롤	●2	
	혈청트리글리세라이드	●2	●2
	HDL-콜레스테롤	●2	●2
	LDL-콜레스테롤		●2
혈당검사	공복시 혈당	●2	●2
	헤모글로빈 A1c	(□2)	(□2)
뇨검사	단백	○	○
	당	●3	○
심전도검사		●2	●2

○ : 필수 항목

□1 : 흉부 X선 검사에 의해 병변 및 결핵 발병의 우려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2 : 혈당 검사에 대해서는, 헤모글로빈 A1c로 대체도 가능(1998년 12월 15일 기발 제697호)

●1 : 2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에 근거해 생략 가능

●2 : 40세 미만(35세를 제외)의 근로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3 : 혈당 검사를 받은 근로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1 : 흡연력 및 의약품 복용이력은 문진 등으로 청취를 철저히 하는 취지 통지(2008년 1월 17일기발 제 0117001호, 보발 제 0117003호)

※2 : ●2에 부가하여 ① 임신중의 여성 등의 근로자이며, 그 복부둘레가 내장지방의 축적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된 자, ② BMI가 20 미만인 사람, ③ BMI가 22미만이며 스스로 복위를 측정해 그 값을 신고한 근로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략가능

〈출처〉 <http://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anzen/080123-3.htmlwprhd>